

의안번호	2206709
의 퇴 인	강선우 의원
회 답 일	2025.2.3.
추계번호	24C6078

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7억 2,000만원(연평균 13억 4,4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4조)	536	—	—	536	—	1,072	214
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250	—	—	—	—	250	50
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	60	60	60	60	60	300	60
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	4	4	4	4	4	20	4
위원회의 업무 등(안 제10조)	100	—	100	—	100	300	60
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(안 제17조)	2,050	682	682	682	682	4,778	956
합 계	3,000	746	846	1,282	846	6,720	1,344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실태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아동사망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6조(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 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8조(국가아동사망 검토위원회의 설치)	(제1항)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의 모든 사망사건을 검토하여 아동사망의 원인과 발생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아동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, 그 대책이 법령·제도·정책에 반영 및 이행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함	의무규정
5	안 제10조(위원회의 업무 등)	(제2항) 위원회는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대통령, 국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14조(사무국의 설치)	(제1항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	의무규정
7	안 제17조(국가아동 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	(제1항) 국가는 아동사망 발생 및 대응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 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개별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를 입력·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(이하 “아동사망 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8조(국립아동 사망검토·예방센터)	(제1항) 위원회는 아동사망의 검토·예방에 관한 연구 및 제19조에 따른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아동사망검토·예방센터(이하 “아동사망 검토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조(실태조사)	○	—
2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—
3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—
4	안 제8조(국가아동사망검토 위원회의 설치)	○	—
5	안 제10조(위원회의 업무 등)	○	—
6	안 제14조(사무국의 설치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7	안 제17조(국가아동사망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)	○	—
8	안 제18조(국립아동사망검토· 예방센터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9	안 제19조(지역아동사망검토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□ (안 제14조, 안 제18조, 안 제19조)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사무국, 국립아동사망검토·예방센터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확대 또는 신규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제정안에서는 기관 및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
- 또한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자세히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
-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사무국, 국립아동사망검토·예방센터,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업무를 현재 유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각각 위탁할 수도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일부 조문들은 추진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
- 본 추계에서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조문(안 제4조·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10조·제17조)에 대하여 추계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안 제4조)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‘2023년 아동종합 실태조사’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10억 7,200만원으로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‘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’ 실시를 위하여 5억 3,600만원의 예산을 편성
 - 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 첫 해인 2027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4조)	536	-	-	536	-	1,072	214

□ (안 제5조)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은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‘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’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2억 5,000만원으로 추계

-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‘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’에 관한 정책연구 비용으로 2억 5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
-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2027년에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250	-	-	-	-	250	50

□ (안 제6조)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‘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평가’의 예산을 준용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원으로 추계

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‘2024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 실적평가’ 사례를 준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매년 6,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	60	60	60	60	60	300	60

- (안 제8조)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7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으로 연간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- 위촉직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,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25만원, 회의 개최 횟수는 연 2회로 가정
 - (회의수당 지급 대상자 수) 제정안은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를 참고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를 7명으로 가정
 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적용하였고,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(회의 개최 횟수) 회의 횟수는 연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5]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·운영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 (안 제8조)	4	4	4	4	4	20	4

- (안 제10조) 제정안에 따라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격년마다 작성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‘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’ 사례를 준용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원으로 추계
-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‘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’ 정책연구비(2024년 기준 1억원)를 준용
 - 추계기간 동안 격년마다 동일하게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6]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위원회의 업무 등 (안 제10조)	100	-	100	-	100	300	60

- (안 제17조)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7억 7,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
- 시스템 구축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‘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’의 시스템 구축 비용 20억 5,0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기간 첫 해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- 시스템 운영·유지관리 비용은 ‘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’의 운영·유지관리 비용 6억 8,200만원(2024년 예산 기준)을 준용하여 2028년부터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7]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시스템 구축비(A)	2,050	—	—	—	—	2,050	410
유지보수 및 관리비(B)	—	682	682	682	682	2,728	546
합 계(A+B)	2,050	682	682	682	682	4,778	956

4. 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7억 2,000만원(연평균 13억 4,400만원)으로 추계

[표 8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4조)	536	—	—	536	—	1,072	214
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250	—	—	—	—	250	50
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	60	60	60	60	60	300	60
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	4	4	4	4	4	20	4
위원회의 업무 등(안 제10조)	100	—	100	—	100	300	60
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(안 제17조)	2,050	682	682	682	682	4,778	956
합 계	3,000	746	846	1,282	846	6,720	1,344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